

— 구미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—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4년 11월 9일

나. 제안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4년 11월 9일

라. 상정일자 : 2004년 11월 16일

제9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기획정보실장 김 인 중

나. 제안이유

- 이중으로 운영되던 “구미시에바란다” 와 “구미시전자민원창구” 의 사이버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통합 및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범위를 세분화 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사이버민원실 명칭 변경
 - 사이버민원실 ⇒ 전자민원창구
-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범위 세분화
 - “특정 종교를 찬양 또는 비방하거나 포교할 목적으로 게시한 경우” 추가

라. 참고사항

-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조 택 환

-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이버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명칭을 변경하고,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범위를 세분화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타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 가결